

한중 푸드트럭 관리 제도 현황 및 시사점

자료조사 : aT 베이징지사

1. 한국의 푸드트럭 관리 현황

□ 2014년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 합법화

○ 푸드트럭 합법화 배경

- 푸드트럭을 통한 개인사업자 일자리 창출로 내수활성화

○ 푸드트럭 합법화 과정

- 유원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2014.8.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유원시설에 한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도시공원·체육시설 및 하천부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토록 허용(2014.10.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푸드트럭 산업 현황

- 한국의 푸드트럭 산업은 2014년 합법화 이후 3년 간 전국에 약 2500대 (교통안전공단 등록 푸드트럭 구조변경 1021대와 구조변경 미신고 푸드트럭 추정치 합산)의 푸드트럭이 생겼으나, 그 중 11%인 282대(2016년 11월 말 행정자치부 기준)만이 영업 중으로 아직 산업적으로 미성숙한 상황

2. 중국의 푸드트럭 관리 현황

□ 2016년 난징시(南京市)에서 중국 최초로 합법화(그 외 지역 합법화 사례 없음)

○ 푸드트럭 합법화 배경

- 법인사업자를 활용하여 푸드트럭 산업의 자본화 · 규모화를 도모

※ 개인사업자에 대한 푸드트럭 운영은 합법화하지 않음

○ 푸드트럭 합법화 과정

- 2016년 초 난징 KFC 법인이 푸드트럭에 대한 식품영업허가증(食品经营许可证)을 난징시에 신청
- 2016년 6월 난징시는 “법인등록지 소재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이 허가증 심사 및 발급 + 실제 영업소재지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이 푸드트럭 등록 및 관리” 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확립
- 2016년 6월 난징시 태준구(秦淮区)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난징 KFC 법인에 중국 최초로 푸드트럭에 대한 식품영업허가증(食品经营许可证)을 발급
- 관리주체가 명확한 유원지 · 관광지(관광단지) · 도시공원 · 체육시설 및 공익활동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품위생을 우려하여 냉동식품 · 생식식품(회, 샐러드)은 판매가 불가능

○ 푸드트럭 산업 현황

- 중국의 푸드트럭 산업은 2016년 난징시 합법화 이후 아직 기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역시 미진한 상황. 식품위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열 냉동식품 및 생식식품(회, 샐러드)을 푸드트럭 영업허가 품목에서 배제하여 푸드트럭은 가열하여 조리한 식품의 판매에 한정되어 있으며, 아직 중국 전역의 푸드트럭 현황에 대한 정보조사 및 관련 데이터가 없는 상황

3. 시사점

- 한국은 2013년, 중국은 2016년 각각 푸드트럭을 합법화하였으나, 양국의 푸드트럭 합법화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한국은 개인사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중국은 법인사업자의 자본과 규모를 통한 푸드트럭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아직까지 양국의 푸드트럭 발전은 미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나 각각의 정책적 목표 하에 추진중으로, 향후 관련 제도 보완 및 정책 지원을 통한 푸드트럭 산업화의 가능성이 높음.

《참고 자료》

1. <제외국 푸드트럭 관리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보원, 2014.12
2. <배달앱으로 푸드트럭 음식 시켜먹을 수 있을까>, 한국무역신문, 2017.7.16
(<http://jedam15.koreafre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60&item=&no=31108>)
3. <南京市食药监局四方面入手 探索“移动餐车”管理新模式>, CFDA, 2017.11.10
(<http://www.sda.gov.cn/WS01/CL0005/216686.html>)